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

본 규정은 공공기관 중 “안전관리 중점기관”의 안전근로협의회 설치대상, 구성 및 운영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임

공공기관의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1 안전근로협의체의 개념

- 안전관리 중점기관인 공공기관(이하 “원청업체”라 함)이 자신의 업무를 도급한 업체(이하 “하청업체”라 함)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사업장별로 구성·운영하는 원·하청 노사 통합 안전 근로협의체(사업장 단위로 운영)
- ※ 예) 한국남동발전의 경우 상시 100명 이상인 영흥화력발전본부, 삼천포 화력발전본부, 분당발전본부, 영동예코발전본부, 여수발전본부 등 5개 작업장에서 각각 별도로 안전근로협의체 운영
- ※ 안전경영위원회는 사업(공공기관 본사) 단위로 운영하는 안전경영 관련 심의 기구(한국남동발전의 경우 본사에 설치하여 운영)

2 근거

-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19.3.19., 관계부처 합동)

1 안전을 우선하는 기관 경영

3 [통제] 참여형 통제 시스템 마련

□ 외부참여 안전협의체 구성·운영

- (안전경영위원회 신설)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근로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신설하여 안전경영 관련 심의기구로 운영(안전지침 제정, '19.3)<기재부·각 부처>
 - * ('19.4) 발전5사 → ('19.하)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확산
- (안전근로협의체) 작업장별로 원청 노사로 구성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하청 노사도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로 개편**하여 작업장 안전에 대한 원·하청간 협의를 강화(안전지침 제정, '19.3)<기재부·각 부처>
 - * 상시 100인(건설업은 총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의 중요 사항 심의·의결을 위해 노사 동수로 구성, 분기별 개최
 - ** (現) 원청의 노사로 구성 → (改) 원·하청 노사로 구성, 산안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으로 같음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19.3.28., 기획재정부)

제12조(안전근로협의체) 안전관리 중점기관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안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원·하청 노사 등이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를 별도로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3] 적용 대상

①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사업(장)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19년 기준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대책 중점기관 32개소 포함 총 97개 기관)

② ①의 사업(장)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9]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③ ②의 사업(장) 중 도급*에 의하여 수행하는 기관의 도급인인 원청업체가 구성·운영 대상

* 도급인의 사업목적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경비·조경·청소 등 용역서비스, 통근버스·구내식당 등 복리후생시설 운영 등)

❖ 적용 제외

○ 본사 등 사무직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제외

※ 적용대상 여부는 본사 기준이 아닌 작업장(장소적 기준) 기준으로 판단

○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는 원·하청업체 사업주가 참여하는 안전보건협의체(매월 1회)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대체하는 노사협의체(매2월 1회)를 운영하므로 적용 제외

4] 안전근로협의체의 구성방법

❖ 안전근로협의체는 하청업체가 있는 공공기관에서 하청업체의 안전보건에 관한 애로·건의사항이 원청업체 의사결정권자에게 전혀 전달되지 아니하여(공공기관 불시점검('19.1월)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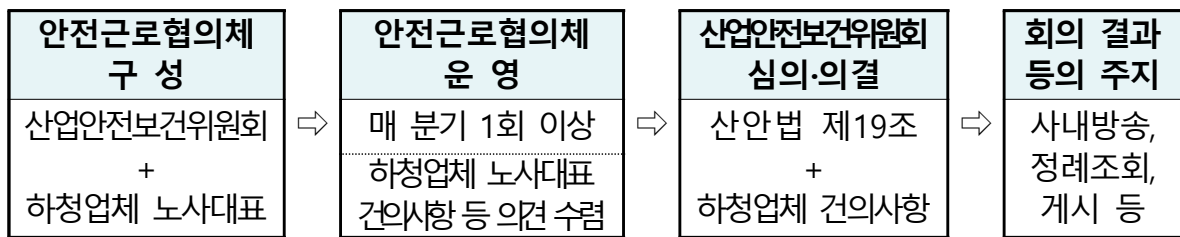
- 원청업체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하청업체의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하고 논의하여 심의·의결토록 하는 취지임

○ 원청업체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하청업체 노사 대표로 구성

- 하청업체의 사측은 현장 최고책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노측은 하청근로자를 대표하는 자가 참여
- 하청업체는 상시 작업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하되, 일시·간헐적으로 작업하는 업체*는 제외

* 3개월(산보위 운영주기) 미만 기간을 정하여 작업을 하는 수급업체

5] 안전근로협의체의 운영방법



* 안전근로협의체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동시에 개최하되, 심의·의결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만 운영하여 각각 별도로 운영

○ (회의개최) 매 분기단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시 운영

○ (하청업체 노사대표의 역할)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①개선요청 사항, ②애로·건의사항, ③차별 등 의견 개선 및 개선요청

- 원청업체는 ①수급인 사업장을 포함한 사업장 전체 산재예방 계획, ②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③수급인의 작업 환경 점검 및 개선 등을 포함

○ (심의·의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만 심의·의결

- 하청업체 안전보건관리 지원, 노사대표 건의사항 등을 포함하여 심의·의결하되, 건의사항 등이 의결로 귀속되는 것은 아님

- (하청업체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하청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인 경우 하청업체는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

- ※ 하청업체는 안전근로협약체에 참여하더라도 당해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면제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 (불이익 금지)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의 노사대표가 안전근로협약체에서 정당한 활동, 발언 등을 한 것을 이유로 그 대표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됨

- ※ 불이익 신고시 산업안전보건 감독대상 우선 선정

<참고>

산업안전보건법중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규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0.1.16.>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제외 법 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광산안전법」 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채굴·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은 제외한다) 나. 「원자력안전법」 적용 사업(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다.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중 항공 관련 사업은 각각 제외한다) 라.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한다)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제1호, 제21조(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4조(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장제2절, 제29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0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1조, 제38조, 제51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52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53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54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55조,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조, 제63조, 제64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 제65조, 제66조, 제72조, 제75조, 제88조,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 및 제160조(제21조제4항 및 제88조제5항과 관련되는 과징금으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다. 정보서비스업 라. 금융 및 보험업 마. 기타 전문서비스업 바.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사.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진 처리업은 제외한다) 아. 사업지원 서비스업 자. 사회복지 서비스업	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다) 및 제30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가. 농업 나. 어업 다.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라. 소매업; 자동차 제외 마.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바. 녹음시설 운영업 사. 방송업	

아.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한다) 자. 임대업; 부동산 제외 차. 연구개발업 카. 보건업(병원은 제외한다) 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파. 협회 및 단체 하. 기타 개인 서비스업(세탁업은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나. 교육 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 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2장제1절·제2절 및 제3장(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외의 교육 서비스업(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은 제외한다) 나. 국제 및 외국기관 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	제2장제1절·제2절, 제3장 및 제5장제2절(제64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6.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제2장제1절·제2절, 제3장(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다), 제47조, 제49조, 제50조 및 제159조(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의결해서는 아니 된다.
 - ⑥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⑦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3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별표 9와 같다.

시행령 [별표 9] <신설 2020.1.16>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제34조 관련)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과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한다)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1차 금속 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제외한다)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한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 농업 11. 어업 1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3.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4. 정보서비스업 15. 금융 및 보험업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16. 임대업; 부동산 제외 1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18. 사업지원 서비스업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20.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 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 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제37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등)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산업 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노사협의체(건설업만 해당)]

제75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건설공사도급인이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건설공사도급인은 제24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사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노사협의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⑤ 노사협의체는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⑥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건설공사도급인·근로자 및 관계수급인·근로자는 제3항에 따라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⑦ 노사협의체에 관하여는 제24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협의체”로 본다.

(시행령) 제63조(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 법 제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란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시행규칙) 제93조(노사협의체 협의사항 등) 법 제75조제5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업재해 예방방법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2.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및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